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3.>](#)

② 제1항에 따른 각각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3.>](#)

1. 사업의 양도 · 양수 신고의 경우

가. 양도 · 양수계약서의 사본

나. 양수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5조제2항제3호의 서류

다. 양수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사업의 상속 신고의 경우

가. 신고인인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나. 신고인과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의 동의서

다.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라. 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5조제2항제3호의 서류

3. 법인의 합병 신고의 경우

가. 합병계약서의 사본

나. 합병당사자인 법인의 최근 1년 이내의 사업용고정자산의 명세서

다.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5조제2항제3호의 서류

라.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시 ·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2항제1호에 따른 양수인과 제2항제3호에 따른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관한 제5조제4항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제4항 단서를 준용한다. [<개정 2012. 12. 3.>](#)

제9조 삭제 [<2015. 12. 31.>](#)

제9조의2(등록의 취소 등) ① 시 · 도지사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5. 12. 31.>](#)

[본조신설 2012. 12. 3.]

제10조(등록취소 등 처분의 기준)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의2 삭제 [<2015. 12. 31.>](#)

제10조의3 삭제 [<2015. 12. 31.>](#)

제10조의4 삭제 [<2015. 12. 31.>](#)

제10조의5 삭제 [<2015. 12. 31.>](#)

제11조(물류연수기관) 법 제50조제2항제3호에 따른 물류연수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3. 14., 2012. 6. 11., 2012. 12. 3., 2013. 3. 23.>](#)

1. 삭제 [<2014. 2. 7.>](#)

2.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물류관련협회 또는 물류관련협회가 설립한 교육 · 훈련기관

3.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물류지원센터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제1항 및 제5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가 설립한 협회 또는 연합회와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가 설립한 협회 또는 연합회가 설립한 교육 · 훈련기관